

2017.07.27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안내

1. 개요

- 관세청에서는 17.7.6. 개최된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결정문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요사항

[결정 17-04-001]

① Travel adapter ; ETA-U90KWK

결정 세번 : 8504.40-3090

② Travel adapter ; EP-TA20KWK

결정 세번 8504.40-3010

[결정 17-04-002]

식기세척기용 Oil seal, Drum seal, Water seal

결정 세번 : 4016.93-0000

2017.07.27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안내

2. 주요사항

[결정 17-04-003]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결정 세번 : 2853.90-9000

[결정 17-04-004]

Micropellet potato

결정 세번 : 2005.20-9000

[결정 17-04-005]

Spring roll pastry

결정 세번 : 1902.19-9000

[결정 17-04-006]

Multi function camera ; Unit-LDWS (95890- C1000)

결정 세번 : 9031.49-9000

[결정 17-04-007]

Peeled tigernuts

결정 세번 : 1212.99-9000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고(통보)

(세원심사과-2562, 2017.7.18)

담당자 : 관세청 세원심사과 행정관 신근호

1. '17.7.6. 개최된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결정문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12건) 1부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

[결정 17-04-001]

1. 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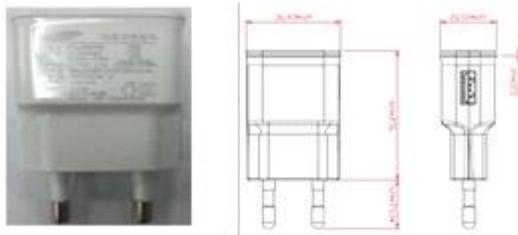
- ①Travel adapter ; ETA-U90KWK ; CHINA
- ②Travel adapter ; EP-TA20KWK ; CHINA

2. 물품설명

< ①번 물품 > Travel adapter ; ETA-U90KWK ; CHINA

○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

* [출력전원] 5V DC 2A



< 물품 이미지 >

< ②번 물품 > Travel adapter ; EP-TA20KWK ; CHINA

○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Micro-USB 충전 단자로 휴대폰 등 전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

* [출력전원] 5V DC 2A 또는 9V DC 1.67A(급속 충전)

※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 충전 가능



< 물품 이미지 >



<확대 이미지>

3. 결정 세번

< ①번 물품 > 8504.40-3090

< ②번 물품 > 8504.40-3010

4. 결정 이유

< ①번 물품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 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II)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류기(rectifiers)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본건 물품은 제8504.40 소호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함

○ 본건 물품이 HSK 8504.40-3010호 “... 전기통신용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휴대 단말기의 충전단자인 Micro-USB 타입의 배터리 충전기로서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무선스피커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배터리 충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3090호에 분류함

< ②번 물품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 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II)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류기(rectifiers)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본건 물품은 제8504.40 소호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함

○ 본건 물품이 HSK 8504.40-3010호 “... 전기통신용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비록 본건 물품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MP3 등 휴대 단말기도 충전이 가능할지라도,

- 본건 물품 내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9V DC 1.67A)이 가능한 제품으로 일반 충전기 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가 구매하는 목적은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보면 주기능은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데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301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2]

1. 품명

- ① Oil seal ; 식기세척기용 ; KOREA
- ② Drum seal ; 드럼세탁기용 ; KOREA
- ③ Water seal A ;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 ④ Water seal B ;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2. 물품 설명

○ 개요

- 모터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품 내부에 그리스(Grease)를 도포하여 모터 Shaft 회전시 회전축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소음 및 진동을 완화
- 식기세척기, 드럼세탁기, 전자동세탁기의 Motor cover*에 부착되며, Shaft와 접촉되나

Seal 자체는 왕복 또는 회전하지 않고 고정

* Seal이 부착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구성요소별 기능

- (고무) Seal의 전체적인 외형을 구성하고 기밀성을 보강
- (철환) Seal 전체적인 고무 외형의 강성을 보강
- (스프링) Seal 내륜 고무의 강성을 보강

○ 물품별 재질

물품	고무	철환	스프링
①번 물품	NBR* (Nitrile Butadiene Rubber) : 연질고무	STS 304(Stainless Steel)	STS 304(스테인레스 강선)
②번 물품		SPCC(Steel Plate Cold Commercial)	
③번 물품			
④번 물품			

* [NBR] 니트릴폴리머에 가황제 및 기타 첨가제를 투입하여 가황한 고무

물품	앞면	뒷면
①번 물품		
②번 물품		
③번 물품		
④번 물품		

< 물품 이미지 >

3. 결정 세번

4016.93-0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 기계류나 전 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4016호에 분류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40류 총설 중 이 류의 범위에서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 ... 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고무, 철환,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세탁기 등의 모터 커버에 장착되어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터 Shaft 회전시 회전축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서,

- 누수를 방지하는 패킹 역할을 하는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4016호의 그 밖의 실(seal)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가황한 고무의 실(seal)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4016.93-0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3]

1. 품명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5HV ;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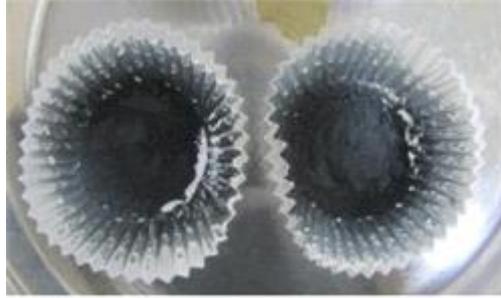
2. 물품 설명

○ 개요

- 검은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구조식] $\text{Li}(\text{Ni}_{0.5}\text{Co}_{0.2}\text{Mn}_{0.3})\text{O}_2$

- (용도)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 물품 이미지 >

3. 결정 세번

2853.90-9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text{Li}(\text{Ni}_{0.5}\text{Co}_{0.2}\text{Mn}_{0.3})\text{O}_2$]로 이루어진 단일의 무기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2853호에는 “... 그 밖의 무기화합물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중 (C) 그 밖의 무기화합물에서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제2853호 외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HS해설서 제28류 제4절에서 “금속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Metal oxides are compounds of a metal with oxygen)이며 ...”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 수소에 금속이 1개만 결합되어야 하는 바, 3개의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이 결합하고 있는 본건 물품은 제2841호 “산화금속산의 염”으로 분류할 수 없고,

- 제2842호는 “그 밖의 무기산 염”이 분류되는 최종호로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단지 비금속의 무기산 염만을 설명하는 바,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의 무기산 염의 본건 물품은 제2842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무기화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853.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4]

1. 품명

Micropellet potato ; ITALY

2. 물품 설명

○ 개요

- 감자그래놀(알갱이) 50%, 감자플레이크 39%, 감자전분 10%, 소금 1%로 혼합·반죽하여 압출기(7kg압력, 80~120℃)로 압출성형하여 절단한 미황색 펠릿상*

* [규격] 직경 2.5mm, 길이 약 3~4mm

- (용도) 퍼핑과자 제조용

○ 제조공정

- 감자그래놀·감자플레이크·전분·소금 + 물 → 혼합 → 압출성형(호화) → 절단 → 건조 → 냉각 → 금속탐지 → 포장



< 물품 이미지 >

3. 결정 세번

2005.20-9000

4. 결정 이유

○ 본건 물품은 감자분말에 감자전분과 소금 등을 넣고 압출성형한 펠릿형상으로 파스타와 유사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므로 관세율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를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밀어내서 자르기·눌러서 자르기·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알갱이·별·팔꿈치형·문자형)으로 만들어지며 ... ”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각종 문헌에 따르면 파스타는 그 자체를 요리해 먹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제1902호 “파스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조리 후 완성된 최종 요리가 제1902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입 이후 팽창시켜 과자를 제조하는 본건 물품은 제19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소호에 “감자”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으로 “감자의 고운 가루·소금과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등글넓적한 모양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텍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chips)’으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감자그래놀, 감자플레이크, 감자전분, 소금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 방식으로 조제한 펠릿상의 본건 물품은 감자 조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조제한 감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5]

1. 품명

Spring roll pastry ; SINGAPORE

2. 물품 설명

○ 개요

- 밀가루, 물, 소금, 식물유 등을 혼합한 반죽을 가열된 회전 롤러로 압착하여 만든 얇은 시트상을 정사각형(19cm × 19cm)으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550g) 후 냉동한 것

- (용도) 상온에서 해동 후 춘권 피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 세번

1902.19-9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 …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물리나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물리나나 가루를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밀어내서 자르기·눌러서 자르기·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알갱이·별·팔꿈치형·문자형)으로 만들어지며 … ”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어류·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춘권을 만드는 피(싸개)로서 조리하면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 일반적으로 제1902호의 파스타는 조리시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되나, 속을 채운 파스타(내용물을 넣지 않은 상태 포함)는 최종 요리에 맞게 조리시(예 : 삶은 것, 튀기는 것) 기본 형태의 변형이 없는 물품도 포함해야 할 것임
 - 본건 물품을 원료로 춘권을 만들어 튀겼을 때 기본 형태의 변형이 없으므로 춘권은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하며, 춘권의 피(싸개)인 본건 물품도 파스타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902.19- 9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6]

1. 품명

Multi function camera ; Unit-LDWS (95890- C1000) ; GERMANY

2. 물품 설명

○ 개요

- 차량 실내 전면 상단에 장착되어 CMOS 카메라로 촬영된 전방 영상정보와 차량의 CAN 통신*으로 전달되는 차량 상태정보를 바탕으로

* [Controller Area Network] 차량 내에서 호스트 컴퓨터 없이 마이크로 콘트롤러나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 통신규격

- 차선과 차량과의 거리 및 각도, 선행 차량과의 상대거리·상대속도·상대가속도, 야간에 도로 및 전방 대향차량의 광원 여부 등 정보를 측정하여 차선이탈·전방충돌 경고신호, 광원 신호를 차체의 ECU*로 전송하는 장비

* [Electronic Control Unit] 자동차의 엔진, ABS 등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 경보음 및 경보아이콘 출력은 본건 물품이 아닌 차체에서 발생

○ 구성요소

- 알루미늄 하우징 내부에 렌즈, CMOS 이미지 센서, DSP*, MCU**, 플래시 메모리 칩, PCB 등으로 구성

* [Digital Signal Processor] 디지털 신호를 기계장치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집적회로

** [Micro Control Unit] 자동차 등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로 컴퓨터의 CPU에 해당



< 물품 이미지(전면) >



< 물품 이미지(후면) >

3. 결정 세번

9031.49-9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로 포함되는 물품으로 “광학식 표면검사기, 신속충격차동측정자와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과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 광학식 측각기나 각도게이지” 등을 예시하고 있고,

- 제9031.49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광학적인 구성요소인 CMOS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 영상을 인식 후, 측정·연산하여 차선이탈 여부,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을 감지하는 물품으로 제9031호의 광학식 측정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광학식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49- 9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7]

1. 품명

Peeled tigernuts ; SPAIN

2. 물품 설명

○ 개요

- 사초과의 괴경*(塊莖)인 기름골(학명 : *Cyperus esculentus*)으로서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것

*[tuber : 덩이줄기] 다년생 초본식물의 영양증식기관의 하나로 땅속줄기 일부분이 비대 성장하여 양분을 축적한 줄기의 특수형태로서 감자, 돼지감자 등이 있음

- (용도) 그대로 식용 또는 물에 불려서 식용

○ 성분

- 전분(약 27%), 식이섬유(약 30%), 지방(약 21%), 당(약 20%), 수분(약 6%) 등



< 물품 이미지 >

3. 결정 세번

1212.99-9000

4. 결정 이유

○ 본건 물품은 전분을 약 27%를 함유한 괴경으로서 그 밖의 성분(지방, 식이섬유 등), 용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 관세율표 제0714호 “전분을 다량 함유한 괴경(塊莖)”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중 (D) 그룹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하여 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에서

- “이 그룹에는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직접이나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하지만, 이 표에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복숭아[승도복숭아(nectarines)를 포함한다]·살구·자두의 핵(核)(주로 아몬드 대용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은 기름 추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사초과의 괴경인 기름골을 건조한 본건 물품은 제1212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않은 주로 식용에 적합한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212.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8]

1. 품명

Snap ring ; 볼조인트용 ; CHINA

2. 물품 설명

○ 개요

- 나선 형태로 만들어진 링 형상의 철강제품*

* [규격] 직경 약 36mm, 두께 약 1.5mm

- (용도) 차량용 현가장치의 스티어링 너클과 서스펜션 암을 연결하는 볼 조인트*에 장착되어 더스트 커버(고무재질)를 고정

* [Ball joint] 타이어의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볼 스티드라 불리는 합금강 종류의 구형태 부품을 소켓 커버로 감싼 모양의 물품



< 물품 이미지 >



< 볼조인트 장착이미지 >

3. 결정 세번

7318.29-0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 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 … 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7318.24소호에는 “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 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D) 코터핀·코터 그룹에서 “써클립(circlip) : 갭(gap)이 있는 단순한 링(ring)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모양[특수 플라이어(pliers)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새김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이들은 항상 그 모양이 어떨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 주위에나 원통 모양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써클립과 기능은 유사하나, 일부 겹친 링 모양으로 써클립의 일반적인 형상과 다른 본건 물품은 제7318.24소호의 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써클립과 유사한 기타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18.29- 0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09]

1. 품명

Cover ; 볼조인트용 ; CHINA

2. 물품 설명

○ 개요

- 중심 부분이 움푹 들어간 디스크 형상의 프레스 가공된 철강제품*

* [규격] 직경 약 3cm, 높이 약 0.8cm

- (용도) 자동차 스티어링 너클과 서스펜션 암을 연결하는 볼 조인트 조립품의 맨 아래쪽에 장착되어 외부 이물질을 차단·밀폐

○ 제조과정

- 금형에 소재 투입 → 벤딩*(철강제 평판의 중심부를 움푹 들어가게 하는 공정) → 블랭킹**(디스크 형상 절단공정)

* [Bending] 강판이나 형강을 곡면이나 곡선으로 굽히는 작업

** [Blanking] 펀치와 다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판금가공(접합, 절단 등) 하는 것



< 물품 이미지(전면) >



< 물품 이미지(후면) >

3. 결정 세번

7326.19-0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326.1소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Forged or stamped, but not further worked)” 이 세분류됨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 ...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하나의 기계에서 ‘벤딩(ben-ding)과 블랭킹(blanking)’ 공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공정이 단조물의 공정(forged or stamped)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문헌자료(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스탬핑(stamping)에는 벤딩(bending) 및 블랭킹(blanking)과 엠보싱(embossing) 등의 공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차량 조향장치의 볼 조인트 맨 아래쪽에 장착되어 이물질을 차단·밀폐하는 역할을 하는 본건 물품은 제7326.1소호의 철강으로 만든 단조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철강으로 만든 제품(단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6.19-0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10]

1. 품명

Palmitic acid 60% ; MASCID 1660 ; INDONESIA

2. 물품 설명

○ 개요

- 팜유를 가수분해*한 후 수소화**하여 증류공정을 거쳐 얻은 팔미틴산(C16:0) 약 53%, 스테아린산(C18:0) 약 34%의 지방산 혼합물로 조성된 백색 비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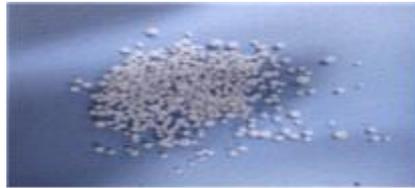
* 팜유지방에 물을 첨가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으로 분리

** 불포화(이중결합) 지방산을 포화(단일결합) 지방산으로 만드는 반응

- (용도) PVC 첨가제 원료

○ 제조공정

- RBDPS(Refined Bleached Deodorized Palm Stearin) → Splitting(분할) → Hydrogenation(수소화) → Distillation(증류)



< 물품 이미지 >

3. 결정 세번

3823.11-0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제3823.1소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겹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고체(포화된)지방산과 액체(불포화)지방산의 분리는 보통 결정화[용제(溶劑 : solvent)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액체 부분은(상관례상 올레산이나 올레인으로 알려진) 소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올레산과 그 밖의 불포화 지방산(예 :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1) 상업적인 스테아린산(스테아린)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백색의 고체물질이다. 이것은 비교적 단단하며 다소 부서지기 쉽고 보통 진주형·플

레이크형 또는 분말형으로 시판된다. 또한 이것은 등온탱크에서 더운 상태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액체상으로 시판되기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에서는 상관례상 스테아린산(스테아린)은 팔미트산과 스테아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두 물질에 대한 함량 기준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문헌자료(브리태니커 사전)에 의하면 상업용 스테아르산은 “거의 같은 양의 스테아르산 · 팔미트산과 소량의 올레산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

- 참고로 EU 품목분류 주해서에서는 상업적 스테아르산에 대하여 “스테아린산의 함량이 30~90%인 것을 제3823.11호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팜유를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지방산 혼합물로 팔미틴산(C16:0) 약 53%, 스테아린산(C18:0) 약 34%로 구성된 고상의 물질로 상업적 용도의 스테아린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스테아린산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823.11-0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11]

1. 품명

Disk filter ; 9362930019 ; KOREA

2. 물품 설명

○ 개요

-차량의 자동변속기 내 유압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앞단에 장착되어 밸브로 유입되는 오일을 여과하는 장치

- 오일을 여과하는 철강재 금속망과 체결하기 위한 프레임(플라스틱)으로 구성

* [Solenoid Valve] 자동변속기 내 밸브바디에 설치되며, 변속에 필요한 유압이 클러치로 유입되도록 밸브 바디 내 압력스위칭 밸브를 작동시킴



< 물품 이미지 >



< 밸브 장착 이미지 >

3. 결정 세번

7314.49-0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16부의 물품 (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 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개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액체용이나 기체용의 여과나 청정 기계류나 장치[다만, 깔때기 여과장치·밀크 여과기·페인트 여과용 여과기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73류)”, 부분품 파트에서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펠트(felt)·금속거즈·강(鋼)의 울(steel wool)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 엘리먼트를 갖춘 내연기관용과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 를 예시하고 있는 바,

- 제8421호 제외품목인 밀크 여과기와 유사하며, 필터 엘리먼트를 갖추지 않은 철강재 여과재인 본건 물품은 제8421호에 분류할 수 없어 구성재료로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중 (A) 클로스(cloth) ... 그릴·망·울타리 그룹에서 “이 그룹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wire)으로서, 손이나 기계로 교차(interlacing)·교직(interweaving)·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다.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여러 용도에 사용한다. 예 : 많은 재료의 세척용·건조용·여과용 ... ” 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철강선으로 만든 여과용 망인 본건 물품은 제7314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철강선으로 만든 망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14.49- 0000호에 분류함

[결정 17-04-012]

1. 품명

Feeder ; NSF27 ; KOREA

2. 물품 설명

○ 개요

- 양돈장 등에서 돼지에게 사료·물을 공급하는 물품*

*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71%, 기타 29%



< 물품 이미지 >

○ 구성요소별 기능

구분	명칭	기능
A	뚜껑(플라스틱)	사료의 투입구를 막아주는 뚜껑
B	조절기 (플라스틱+ 스테인레스스틸)	사료배출튜브(㉑)의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으로 ㉑의 높이에 따라 배출되는 사료량이 조절됨
C	사료 호퍼 (플라스틱)	사료가 담겨져 보관되는 부분
D	펜스라인 고정 틀 (스테인레스스틸)	돼지 사육장 펜스에 연결되어 고정되는 부분
E	급수배관	상단의 급수라인과 연결되어 하단에 부착한 니플급수기(㉒)에 물을 공급
F	사료배출튜브 (스테인레스스틸)	사료 호퍼(㉑)에 담긴 사료가 배출되는 곳으로 돼지가 사료를 먹으면서 이 곳을 자연스럽게 치게 되면 그 힘과 중력에 의하여 튜브 속의 사료가 사료조(㉓)로 떨어짐
G	니플급수기 (스테인레스스틸)	니플 꼭지를 돼지가 누르면 물이 배출되는 곳으로 돼지의 누르는 동작이 끝나면 꼭지가 스프링의 힘에 의

		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물 배출이 중단
H	사료조 (스테인레스스틸)	사료가 담기는 부분

3. 결정 세번

8436.80-0000

4.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16부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시장판매용 과채류 재배원(market gardens)·가금(家禽)사육장이나 양봉장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F) 소·말·돼지 등 사육을 위한 자동급수기 : 예를 들면, 돌쩌귀로 붙인 판을 갖춘 금속으로 만든 물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의 콧등에 의하여 눌러지면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는 바,

- 양돈장 등에서 돼지에게 사료와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본건 물품은 농업용 기계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농업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6.80-0000호에 분류함